



世宗特別
自治市議會
Sejong City Council

제3회 세종시의회임시회
제2일차 산업건설위원회
2012. 8. 31(목) 10:00

-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 -

검 토 보 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의수

-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 -

검 토 보 고

1. 제안 경과

- 의안번호 : 제 234 호
- 발 의 자 : 이 경 대 의원 (찬성자 4명)
- 발의일자 : 2012. 8. 17
- 회부일자 : 2012. 8. 23

2. 제안 이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가로수의 공익적인 기능유지와 아울러 가로미관을 향상시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함에 목적을 두고,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있음

3. 주요 내용

-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가로수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구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가로수 수종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가로수 식재기준 및 제한구역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주민들이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4. 관련 법규

- 「산림기본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지방세기본법」
-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5. 참고사항

- 관련부서 : 경제산업국 산림축산과
-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입법예고 : 세종특별자치의회 홈페이지 게재
 - 기 간 : 2012.08.21 ~ 08.27(6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없음
- 의견조회
 - 조회기관 : 세종특별자치시장(산림축산과)
 - 조회의견 : 의견 없음

6.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이경대의원이 2012년 8월 17일 대표발의(찬성자 4명)하여 8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유지와 가로 미관을 향상시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라 하겠습니다.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였고, 집행부 관련 실무부서(산림축산과)의 의견을 조회한 바 있으며, 조례안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를 하였습니다
-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조례제정 법 규정 준수여부,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관내 주요도로 노선별 기 조성되어 있는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을 위해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가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관 련 법 령

산림기본법

[시행 2011.9.30] [법률 제10480호, 2011.3.29, 일부개정]

제18조(도시지역 산림의 조성·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지역의 산림 및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456호, 2012.6.1, 일부개정]

제19조의2(도시림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전국의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시림등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시림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등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도시림등의 정보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도시림등기본계획의 시행성과 및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림등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도시림등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림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현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도시림등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2에 따라 수립된 도시림등기본계획에 따라 그 관할 구역의 도시림등을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시림등 조성·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 승인 기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② 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은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하며, 도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832호, 2012.6.5,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10.7.21>

1. 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2. 임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3. 임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밭두렁
4. 임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제방·도랑 또는 연못

②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1. 임도사업, 산불예방·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의 보전·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복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4.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자연휴양림 및 산

림욕장의 조성, 등산로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의 구조개선, 임업 진흥권역의 지정 및 산촌의 진흥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9.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및 수목원의 등록·운영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0.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10의2.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1. 그 밖에 산림자원의 조성·육성·관리 또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

③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8.6.20>

1.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2.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④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신설 2008.6.20>

1.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3.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및 리도

제19조(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도시림등 실태를 면밀히 조사·분석한 후 도시림등이 건강하고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림등 자원의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발휘, 국민의 이용 및 참여기회 증진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림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림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림등의 보전·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림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림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의2. 가로수의 지역별·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8.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되, 도시림등의 현저한 상황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⑤ 도시림등의 기능별 구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및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식재 지역 등 필요한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82호, 2012.6.8, 일부개정]

제23조(도시림의 기능별 관리) ① 영 제19조제5항에 따른 도시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원형 : 자연체험, 레크레이션, 환경교육 등 산림교육·문화의 장소로 이용하는 산림
2. 경관형 :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시각적으로 풍요로움을 주는 산림
3. 방풍·방음형 : 바람, 소음, 대기오염물질을 완화시켜 쾌적한 거주환경이 되도록 하는 산림
4. 생산형 : 쾌적한 거주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목재나 버섯 등의 임산물을 생산하는 산림

② 제1항에 따른 도시림의 기능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③ 삭제

제24조(가로수 조성·관리) ① 영 제19조제5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은 별표 10과 같으며, 그 밖에 가로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삭제

③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정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내용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가로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의2(도시림등의 시범사업) ①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도시림 및 생활림의 녹지 확충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1. 녹지율의 향상을 위한 사업
2.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3. 경관개선을 위한 사업
4. 산림생태계의 안정 및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② 산림청장은 국토의 녹색네트워크 구축과 가로수 기능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1. 가로수 조성에 관한 사항
2. 가로수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로수와 관련된 사업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2.4.1] [법률 제11136호, 2011.12.31, 일부개정]

제59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世宗特別
自治市議會
Sejong City Council

제3회 세종시의회임시회
제2일차 산업건설위원회
2012. 8. 31(목) 10:00

-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검 토 보 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의수

-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

검 토 보 고

1. 제안 경과

- 의안번호 : 제 235 호
- 발 의 자 : 장 승 업 의원 (찬성자 3명)
- 발의일자 : 2012. 8. 17
- 회부일자 : 2012. 8. 23

2. 제안 이유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조의 따라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자문을 구하고,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가축방역협의회의 설치와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2조, 제3조)
-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 협의회 위원의 임기 해촉사유 규정(안 제5조, 제6조)
- 협의회 참석하는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 규정(안 제8조)

4. 관련 법규

- 「가축전염병예방법」
-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5. 참고사항

- 관련부서 : 경제산업국 산림축산과
-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입법예고
 - 기 간 : 2012.08.21 ~ 08.27(6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없음
- 의견조회
 - 조회기관 : 세종특별자치시장(산림축산과)
 - 조회의견 : 의견 없음

6.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가축전염병예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라 하겠습니다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였고 집행부 관련 실무부서(산림축산과)의 의견을 조회한 바 있으며, 조례안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를 하였습니다.
- 같은 조례 제4조의 가축방역협의회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 충청남도가축위생연구소장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청남도본부장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동기가 없어 세종특별자치시와 해당 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조례제정 법 규정 준수여부,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가축방역체계의 확립과 축산업 발전을 위해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 2012.8.23] [법률 제11348호, 2012.2.22, 일부개정]

- 제4조(가축방역협의회) ①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두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가축방역협의회를 둔다.
- ② 중앙가축방역협의회와 지방가축방역협의회에는 축산 또는 수의(獸醫)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중앙가축방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방가축방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2.3.26]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65호, 2012.3.26, 타법개정]

제4조(가축방역협의회의 기능)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가축방역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농림수 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가축전염병의 방역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수출 또는 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의 검역대책 수립 및 검역제 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의2. 삭제

3.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 인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소속의 식품산업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 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가축방역 또는 검역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위원중에서 호선한 1명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호선된 부위원장, 농림수산식품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가축방역 또는 검역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협의회의 위원은 축산 또는 수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 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과 여성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⑥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⑦ 위원회에 질병별·축종별 전문분야 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⑧ 전문분야별 협의회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6조(협회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회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협회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협회의회의 간사 등) ①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가축방역 또는 검역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②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전문분야별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